

발급번호 : 0507-9677

축산물 (돼지) 등급판정확인서



「축산물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24년 11월 13일

축산물품질평가사 소속 : 충북지원

성명 : 김미나



신청인	성명	김남욱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129-81-30202
	업소명	(주)팜스코	업태유형	기타
주소	경기도 안성시 제2공단4길 33			
도	업체명	(주)팜스코	등급판정일자	2024년 11월 12일
총량	소재지	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54		043-535-3412

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
110128100963(416)	1+	110128100963(433)	1	110128100963(453)	1
110128100963(417)	1+	110128100963(435)	1+	110128100963(454)	1
110128100963(418)	1+	110128100963(436)	1+	110128100963(455)	1
110128100963(419)	1+	110128100963(437)	1+	110128100963(456)	1+
110128100963(421)	1+	110128100963(439)	1+	110128100963(457)	1
110128100963(422)	1	110128100963(441)	1+	110128100963(458)	1+
110128100963(423)	1+	110128100963(443)	1	110128100963(459)	1+
110128100963(425)	1+	110128100963(444)	1+	110128100963(460)	1+
110128100963(426)	1+	110128100963(445)	1	110128100963(461)	1+
110128100963(427)	1+	110128100963(447)	1+	110128100963(462)	1+
110128100963(428)	1+	110128100963(448)	1+	110128100963(464)	1+
110128100963(429)	1+	110128100963(449)	1+	110128100963(466)	1+
110128100963(430)	1+	110128100963(450)	1	110128100963(468)	1+
110128100963(431)	1	110128100963(451)	1+	110128100963(469)	1+
110128100963(432)	1+	110128100963(452)	1+	110128100963(470)	1+

전체 : 45두 (1+등급 : 35 1등급 : 10 2등급 : 0 동외등급 : 0)

발급횟수 : 1건 발행일자 : 2024-11-13 10:22:37



제충북10-2024112-0011-0호

도축검사증명서



- 가 축 의 종 류 : 돼지
- 두 수 및 이력번호 (소, 돼지, 닭, 오리만 해당합니다) : 101 (110128100963)
- 중 량 : 지육 8769 kg, 내장 등기타 1414 kg
- 각 업 장 명 : (주)팜스코
- 검 인 번 호 : 충북10
- 도 축 일 : 2024년 11월 12일

7. 도 축 의뢰 인 : 주소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575-1

성명 김남욱 의뢰업소 (주)팜스코

8. 안전관리인증능력(AACCP)에서 출하된 기록 여부 : []여, [O]부

9. 수입소의 경우

- 수출 국가명 :

- 검역계통 도축일로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여부 :

10.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: 폐기(12 kg), 식용 외의 용도전환(0 kg)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1조 제1항·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

2024년 11월 12일

검사관 소 속 :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
음성축산물검사소

성 명 : 신다혜 (서인)

(수의사 면허번호 : 17577)



*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www.ekape.or.kr) "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"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* 본 확인서는 축산물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등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